

의정활동보고서

제159회 정례회 (2001. 7. 2 ~ 7. 11)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59회 정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중에도 지역에서 가뭄현장을 찾아 지역주민을 위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가뭄대책 추진에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와 수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민들이 또다시 수해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여러가지 현안사항 때문에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사 세무조사로 인한 정부와 일부 언론사 간의 의견 대립이 조속히 해결되어 온 국민이 합심하여 어려운 국가경제 회복에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오늘 안동시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관련법 제정과 관련한 북부지역주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 관련지역 의원님들을 중심으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부처, 국회등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도의회에서도 2000. 12. 27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 환경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법률의 국회 심의과정이나 시행령, 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로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 6대 의회가 개원된 지 3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의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지난 10년간 지방자치의 실현과정에서 도민의 걱정과 기대속에 적지않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착실하게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부분적으로 충족하지 못한점도 있었습니다.

6대 의회 개원 이래 우리 의회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학술세미나와 연수회를 통하여 의회제도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함과 아울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318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제

도의 정착을 도모하였고, 2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욕구 수준의 증가와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00 회계연도 결산안과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경상북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곧 제출될 예정입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결산심사를 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한된 이번 정례회 일정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7. 2.

경상북도의회의장 柳 仁 熙

차 례

I . 개 황	
II.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민원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2. 조례공포사항

3.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4. 기타사항

부 록

☐ 조례안

☐ 승인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59회 정례회는 2001년 7월 2일 개최하여 7월 11일까지 10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15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7월 2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9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0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보고와 2001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한 후 휴회하였다.

7월 2일부터 7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안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7월 6일부터 7월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연도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안 종합심사를 하였다.

7월 1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회계연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후 제159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정례회

나. 소집 요구 : 김응규 의원 외 19인

다. 집회 공고 : 2001. 6. 21

라. 집 회 일 : 2001. 7. 2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1. 7. 2~7. 11 (10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99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자치 행정	교육 사회	농수산	산업 관광	건 설	예결 특위	양민 특위
금회	15	1	2	2	3	1	2	1	3	
누계	460	37	71	73	77	58	52	41	50	1

※ 누계는 제6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1.7.2(월) 11:00	1. 제1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건 2. 2000회계연도경상북도및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결과보고 3. 2001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제 1 차
7. 11 (수) 11:00	1. 2000회계연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0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제 2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1.7.2(월) 11:00	☐ 안전심사 1. 제159회 정례회 회기협회의 건 2. 2000회계연도결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기획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1.7.3(화) 10:30	☐ 안전심사 1. 2000회계연도결산안 - 기획관리실 소관 - 공보관실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2001.7.4(수) 11:00	☐ 안전심사 1. 2000회계연도결산안 - 경도대학 소관 - 감사관실 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1.7.3(화) 10:30	☐ 안건심사 1.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회계연도결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1.7.4(수) 11:00	☐ 안건심사 1. 2000회계연도결산안 - 공무원교육원 소관 - 소방본부 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교육사회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1.7.3(화) 11:00	☐ 안전심사 1. 2000회계연도결산안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2001.7.4(수) 11:00	☐ 안전심사 1. 2000회계연도결산안 -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2001.7.5(목) 11:00	☐ 안전심사 1. 2000회계연도결산안 - 보건환경산림국 소관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01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3 차 원안가결 의결유보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1.7.3(화) 11:00	☐ 안전심사 1. 2000회계연도결산안 - 농수산국 소관 - 농업기술원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2001.7.4(수)	☐ 현지확인 1. 2000회계연도결산안 - 농산물 수출업체(경산아진종합식품)	

<산업관광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1.7.3(화) 11:00	☐ 안전심사 1.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2. 2000회계연도결산안 - 경제통상실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22001.7.4(수) 11:00	☐ 안전심사 1. 2000회계연도결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건설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1.7.3(화) 11:00	☐ 안전심사 1. 2000회계연도결산안 - 건설도시국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2001.7.4(수)	☐ 현지 확인 -영덕오십천 오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품~온정간 지방도확 · 포장공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1.7.6(금) 10:00	☐ 안전심사 1. 2000회계연도결산안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2001.7.9(월) 11:00	☐ 안전심사 1. 2000회계연도결산안 - 경상북도 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2001.7.10(화) 11:00	☐ 안전심사 1. 2000회계연도결산안 - 경상북도 소관	제 3 차 원안가결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안	수정				
계		5 (312)	5 (312)	5 (264)	(47)	(1)			
조 례 안	소계	3 (199)	3 (199)	3 (166)	(32)	(1)			
	의 회 제 안	(12)	(12)	(10)	(2)				
	도지사 제 출	3 (142)	3 (142)	3 (116)	(25)	(1)			
	교육감 제 출	(45)	(45)	(40)	(5)				
예 산 안		(18)	(18)	(5)	(13)				
동의·승인		2 (38)	2 (38)	2 (38)					
건 의 안		(14)	(14)	(14)					
결 의 안		(14)	(14)	(13)	(1)				
기 타 안		(29)	(29)	(28)	(1)				

※ • ()내는 제6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동의 승인	건의	결 의	기 타			
계	15 (333)	14 (321)	3 (199)	(18)	10 (46)	(14)	(14)	1 (30)	(4)	(4)	1 (4)
의회운영	2 (11)	2 (9)	(4)		1 (1)		(1)	1 (3)	(2)		
기 획	1 (21)	1 (21)	(13)		1 (8)						
자치행정	2 (76)	2 (71)	2 (58)		1 (11)	(1)	(1)			(3)	(2)
교육사회	3 (76)	2 (74)	(67)		2 (5)	(1)	(1)			(1)	1 (1)
농 수 산	1 (15)	1 (14)	(11)		1 (1)	(2)			(1)		
산업관광	2 (30)	2 (28)	1 (23)		1 (2)	(3)			(1)		(1)
건 설	1 (18)	1 (18)	(15)		1 (1)	(1)	(1)				
특 별	2 (27)	2 (27)		(18)	2 (8)			(1)			
본회의	(59)	(59)	(8)		(9)	(6)	(10)	(26)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
누 계	3	-	3	3	-

※ 누계는 제6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 (203)	(33)	(10)	(12)	1 (58)	(12)	(15)	(18)	(24)	(21)
의회운영										
기 획	(3)	(1)			(2)					
자치행정	(30)	(24)			(2)		(1)			(3)
교육사회	(36)		(3)	(1)	(2)	(12)		(11)	(1)	(6)
농 수 산	(32)	(1)	(1)	(3)	(5)		(1)		(19)	(2)
산업관광	(36)	(2)	(4)	(5)	(3)		(11)	(7)	(2)	(2)
건 설	1 (61)	(5)	(2)	(3)	1 (44)		(2)		(2)	(3)
특별위원회	(5)									(5)

※ ()안은 6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202)	(200)	(2)			1 (1)
의회운영						
기 획	(3)	(3)				
자치행정	(30)	(29)	(1)			
교육사회	(36)	(35)	(1)			
농 수 산	(32)	(32)				
산업관광	(36)	(36)				
건 설	(60)	(60)				1 (1)
특별위원회	(5)	(5)				

※ ()안은 제6대 의회 누계

VI.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교육감 (2001. 6. 12)	2001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교육사회위원회 (2001. 6. 12)
경상북도교육감 (2001. 6. 21)	2000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교육사회위원회 (2001. 6. 21)
경상북도지사 (2001. 6. 25)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2001. 6. 25)
경상북도지사 (2001. 6. 25)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2001. 6. 25)
경상북도지사 (2001. 6. 25)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산업관광위원회 (2001. 6. 25)
경상북도지사 (2001. 6. 26)	2000회계연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각상임위원회 (2001. 6. 26)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1. 6. 16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	2001. 6. 28

3.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건 설 위원회	6. 28	청 도 운문댐	○ 운문댐 호우피해 현장확인

4. 기타사항

○ 여성부출범 평등문화실천 전국 릴레이 경북대회

- 일 시 : 2001. 6. 14(목) 14:30
- 장 소 : 포항시민회관 광장
- 참 석 : 이상천 부의장(축사), 손규삼, 장성호, 이태조, 이원만,
김정관, 이양강, 이금선 의원

○ 포항MBC 창사30주년기념 환동해 학술 심포지엄

- 일 시 : 2001. 6. 15(금) 10:00
- 장 소 : 포항 시그너스호텔
- 참 석 : 이상천 부의장(토론자)

○ 낙동강물관리특별법제정 재검토 요청

- 일 시 : 2001. 6. 20(수) 10:30
- 장 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참 석 : 김선종, 장대진 의원

○ 가야문화권 보존 및 관광자원화 보고회

- 일 시 : 2001. 6. 20(수) 15: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김기대, 김종섭, 김창언, 나종택, 박영화, 백천봉, 이상수 의원

○ 『도심속의 고향장터』 개장기념 농산물 큰잔치 직판행사

- 일 시 : 2001. 6. 23(토) 07:00
- 장 소 : 대구 비산동 『도심속의 고향장터』
- 참 석 : 이정백 농수산위원장

○ 제51주년 6·25 기념행사

- 일 시 : 2001. 6. 25(월) 11:00
- 장 소 : 상주실내체육관
- 참 석 : 류인회 의장(축사)

○ 6·25참전 경찰순국비 제막식

- 일 시 : 2001. 6. 25(월) 15:00
- 장 소 :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
- 참 석 : 류인회 의장(축사)

○ 케냐 관광상공장관 환영만찬

- 일 시 : 2001. 6. 26(화) 18:30
- 장 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류인회 의장

○ 『친환경농업 종합발전 10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 일 시 : 2001. 6. 26(화) 14:00
- 장 소 : 농업인회관
- 참 석 : 이원만 농수산위원회 간사(지정토론자)

○ 21세기선도 세계일류중소기업 지정서 수여식

- 일 시 : 2001. 6. 27(수) 10:3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류인회 의장, 이철우 부의장, 산업관광위원

○ 『경북 상이군경 복지회관』 기공식

- 일 시 : 2001. 6. 27(수) 14:30
- 장 소 : 구미시 인의동
- 참 석 : 손만덕 교육사회위원장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 일 시 : 2001. 6. 29(금) 11:00
- 장 소 : 전라북도의회
- 참 석 : 류인회 의장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1. 6. 29(금) 11:00
- 장 소 : 경기도의회
- 참 석 : 김창언 운영위원장

○ 영농규모화사업 발전세미나

- 일 시 : 2001. 6. 29(금) 14:00
- 장 소 : 농업기반공사 경북지사
- 참 석 : 이정백 농수산위원장(지정토론자)

부 록

- 조 례 안 : 3건
- 승 인 안 : 2건

□ 조 례 안 : 3건

-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회

2001. 7.11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지방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4항중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을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한한다) 및 시행규칙 제42조제2항(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한한다)”으로 하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⑦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7조중 “2원”을 “3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회

2001. 7.11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
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
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
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

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내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회

2001. 7.11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 정의는 소비자보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의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안전시책의 강구
2. 소비자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3. 사업자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 유도
4.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의 방지대책의 강구
5. 소비생활관련 주요정책결정에 소비자의사의 반영
6. 소비자피해의 구제상담
7.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8.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

제1절 안전대책의 강구

제4조(안전대책의 강구)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건강·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및 시험검사)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1.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등 그 주요한 내용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대하여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거·파기 권고 또는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물품 및 용역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①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용역의 제공금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당해 권고의 수락여부를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도지사는 당해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수거·파기명령) ①도지사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그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와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위해 물품을 수거하여 파기하는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거하여 파기하는 공무원외에 관계 공무원 1인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절 부당거래의 방지등

제10조(부당거래의 조사) 도지사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거래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초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경솔·무경험·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기만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철회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시정조치)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절 소비자피해의 구제

제13조(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조직·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피해구제의 처리) ①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서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등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해구제의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구제기준)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관련법률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다.

제17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피해사례의 공표) 도지사는 소비자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리어 피해의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공보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4절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지원

제19조(소비자의견 반영 및 정보제공)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을 결정하는 경우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책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환경성 등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그 등록부를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의 지급) 도지사는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험 및 검사) ①도지사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을 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상당한 기간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해당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주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시험·검사시설 지원) 도지사는 물품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소비자단체의 시험·검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시험·검사시설의 설치·구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4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관련조례 및 규칙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보호 관련행정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한 심의
4.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소비자보호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소비자단체, 경제계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에 소비자보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간사)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32조(검사 및 자료제출)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조례의 시행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공표) 도지사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관계법령 및 조례위반내용
3. 이 조례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의 내용

제34조(청문)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공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별 칙

제3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도지사는 소비자보호법 제5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하며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승인안 : 2건

- 2000회계연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000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정활동보고서(제159회 정례회)

2001. 7 인쇄 / 2001. 7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954-9855

FAX : 955-9185

인쇄 / 서재기획

전화 : 256-5672

FAX : 256-5673

<비매품>